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5. 24 선고 2018가단4797 판결 [부동산매매대금 잔금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완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9. 4. 5

판결 선고 2019. 5. 24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2. 6.부터 2018. 5. 1.까지연 5%, 2018. 5. 2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가 2016. 11. 15.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C, D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매매대금 3억 2,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잔금 1억 6,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, 원고가 2016. 12. 5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이는 2016. 12. 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8. 5. 1.까지 민법에 의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누리